

4. 建設業法施行令改正令(案)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7-111號 1997. 4. 22

주요 골자

- 가. 이 영의 제명을 건설업법시행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하고,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의 내용을 통폐합 함.
- 나.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고, 관계부처 공무원·업계대표·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.
- 다. 건설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업종분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, 업종별 업무내용을 일부 조정함.
- (1) 일반건설업에 대규모 플랜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설비공사업을 신설하고, 특수건설업이었던 조경공사업을 일반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일반건설업을 3개업종에서 5개업종으로 함.
 - (2) 전문건설업에 석도설치공사업을 신설하고, 특수건설업이었던 철강재설치공사업과 준설공사업, 다른 법률에서 흡수된 가스설비공사업,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, 온돌시공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각각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전문건설업을 23개업종에서 30개업종으로 함.
- 라. 건설업에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을 촉진하고자 건설업면허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.

- (1) 건설업체의 공제조합에의 출자의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1년에 임의출자제로 전환함.
- (2) 건축공사업 및 인력중심 전문건설업(의장공사업 등 5개업종)의 면허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완화함.
- (3) 조경식재공사업면허기준상 조경수목의 토지는 자기소유 토지만 인정하던 것을 5년이상 장기간 임차한 토지도 인정하도록 함.

마. 전문건설업종 다른 법률에서 흡수된 가스설비공사업,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, 온돌시공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현행대로 등록업종으로 하고 그 등록기준도 현행과 같이 함.

바.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은 건설공사의 실적, 자본금 및 재무구조, 기술자보유상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, 건설공사의 품질·안전·환경관리수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, 건설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등 공종별로 평가하여 공시하고, 기타 업종의 경우도 세부전문분야별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.

사.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공부문의 공사와 2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도록 함.

아. 건설업에 관한 기타 규제를 다음과 같이 완화함.

- (1) 건설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일반공사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만, 전문공사는 7백만원에서 1천만원미만인 공사로 확대함.
- (2) 일반건설업과 겸업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, 준설공사업, 석도설치 공사업으로 하고, 전문건설업간에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의 수는 2개업종에서 5개업종으로 확대함

- (3) 전문건설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일반공사의 범위를 공사금액 7천만원미만에서 1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함.
- (4)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공사금액 7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인 공사로 그 범위를 축소함.
- (5)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할 수있는 대상공사의 공사로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완화함.

개 정 이 유

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·공포(1996. 12. 30. 법률 제5,230호)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주택회보